

다대동 현안사항 협조요청 처리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. 2. 19

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동정자문위원회 최용석외 8명

나. 회부일자 : 1992. 4. 17

다. 상정일자 : 1992. 4. 22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 : 별첨안 참조

나. 주요팔자 : 별첨안 참조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 : 별첨 보고서 참조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조용근위원의 동의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실시하도록 관계 기관에 발송하는 건의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동의안이 있어 건의서를 내도록 가결하였음